

제143회(임시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

제1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	1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5면
2. 공평구역 제15,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(종로구청장 제출)	9면
3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결정안 의견청취	15면
4.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	19면
○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22면
5.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	25면

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4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04. 9.

발 의 자 : 김복동 의원의 6인

1. 개정이유

-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함에 따라,
- 2004년도 우리구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에 대비하여 최고 1.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어,
-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탄력세율을 적용한 지역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서 권한위임된 재산세의 세율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2004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의거 종로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5% 인하 조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(1)목 및 제188조제6항

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2. 건축물

(1)주택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<과세표준>	<세 율>
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3
1,200만원 초과	3만6천원 + 1,200만원 초과금액의
1,600만원 이하	1,000분의 5
1,600만원 초과	5만6천원 + 1,600만원 초과금액의
2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10
2,200만원 초과	11만6천원 + 2,200만원 초과금액의
3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30
3,000만원 초과	35만6천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
4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50
4,000만원 초과	85만6천원 + 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0

⑥시장·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주택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<과세표준>	<세 율>
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2.55
1,200만원 초과	30,600원 + 1,200만원 초과금액의
1,600만원 이하	1,000분의 4.25
1,600만원 초과	47,600원 + 1,600만원 초과금액의
2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8.5
2,200만원 초과	98,600원 + 2,200만원 초과금액의
3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25.5
3,000만원 초과	302,600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
4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42.5
4,000만원 초과	727,600원 + 4,000만원 초과금액의
	1,000분의 59.5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1조의2 제1호가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1조의2(세율)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건축물</p> <p>가.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<과세표준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<세 율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200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000분의3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200만원 초과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3만6천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600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000분의5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600만원 초과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5만6천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2,200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000분의10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2,200만원 초과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1만6천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3,000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000분의30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3,000만원 초과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35만6천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4,000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000분의50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4,000만원 초과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85만6천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000분의70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- 라.(생략)</p> <p>2.- 3. (생략)</p>	<과세표준>	<세 율>	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3	1,200만원 초과	3만6천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	1,600만원 이하	1,000분의5	1,600만원 초과	5만6천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	2,200만원 이하	1,000분의10	2,200만원 초과	11만6천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	3,000만원 이하	1,000분의30	3,000만원 초과	35만6천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	4,000만원 이하	1,000분의50	4,000만원 초과	85만6천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		<u>1,000분의70</u>	<p>제21조의2(세율)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건축물</p> <p>가.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<과세표준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<세 율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200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000분의 2.55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200만원 초과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30,600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600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000분의 4.25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600만원 초과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47,600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2,200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000분의 8.5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2,200만원 초과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98,600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3,000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000분의 25.5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3,000만원 초과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302,600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4,000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1,000분의 42.5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4,000만원 초과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727,600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000분의 59.5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- 라.(현행과 같음)</p> <p>2.- 3. (현행과 같음)</p>	<과세표준>	<세 율>	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2.55	1,200만원 초과	30,600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	1,600만원 이하	1,000분의 4.25	1,600만원 초과	47,600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	2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8.5	2,200만원 초과	98,600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	3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25.5	3,000만원 초과	302,600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	4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42.5	4,000만원 초과	727,600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		<u>1,000분의 59.5</u>
<과세표준>	<세 율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초과	3만6천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600만원 이하	1,000분의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600만원 초과	5만6천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,200만원 이하	1,000분의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,200만원 초과	11만6천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,000만원 이하	1,000분의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,000만원 초과	35만6천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 이하	1,000분의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 초과	85만6천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1,000분의7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과세표준>	<세 율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2.5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초과	30,600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600만원 이하	1,000분의 4.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600만원 초과	47,600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8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,200만원 초과	98,600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25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,000만원 초과	302,600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4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 초과	727,600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1,000분의 59.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